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2000.
제 출 자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소속 및 직제명칭 변경
- 『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』 설치에 따른 정보산업협의회 구성등 행정적 지원을 통한 정보화촉진 및 지역정보 산업의 육성

2. 주요골자

-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소속 및 직제명칭 변경(제7조 제3항, 제4항, 제10조 제3항)
 - 기획조정실장 ⇒ 자치행정국장
 - 정보화담당관 ⇒ 정보통신과장
-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제11조(기능)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 - 6. 지역정보산업육성 지원

3.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붙임

5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3항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중 “정보화담당관”을 “정보통신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6. 지역정보산업육성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